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2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19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4. 17.(금)	담당부서	활용촉진과
담당과장	김미애 과장(044-203-4150)	담 당 자	형명우 사무관(044-203-4154)

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도 원스톱으로

- 대한상의 시스템과 연계해 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가능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(FTA KOREA)*을 **대한상공회의소**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**연계**시킴으로써 4월 20일(월)부터 기업들이 **FTA KOREA내에서 원산지증명서(C/O) 기관발급**** **신청**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**원스톱으로 처리 가능**하다고 밝혔다.

*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·증명 업무(자료 입력, C/O자율발급, 사후검증대응 등)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, KT NET에 시스템 구축, 기업은 웹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 이용 가능

**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(세관 또는 상공회의소)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, 기관발급 방식 FTA로는 한-중국, 아세안, 인도, 베트남, 싱가포르의 5개 FTA가 있음

○ 기업들이 **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**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**원산지증명서(C/O)를 제출**해야 하는데,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**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기관**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**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** 한다.

○ 관련하여, **FTA KOREA를 통해**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**정보를 관리**(자율발급은 가능)하고 있는 **기업의 경우에도**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**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**로 **접속**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스캔 등을 통해 **다시 제출**해야 하는 등의 **불편**이 있었다.

□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**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**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양 시스템을 연계**하고, **관련 기능**을 **대폭 개선**하였다.

○ **FTA KOREA에서 작성된 C/O 발급 신청 자료**가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스템으로 **직접 전송**되도록 하여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, 이 과정에서 **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**이 **추가**되어 제출자료의 누락 등을 방지하였다.

○ 그리고, **수출신고내역 항목**이 원산지판정 **기초데이터로 맵핑되어 C/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**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.

○ 또한,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**C/O 원본**을 **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**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.

□ 증명서 발급기관인 **대한상의**에서도 이번 양 시스템의 연계로 **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**가 훨씬 더 **효율적**으로 **운영**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,

○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통상 2일(법정 처리기한 3일) 가량 소요되는 **C/O 발급업무 처리시간**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**인증수출자*의 C/O 발급 수준**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.

*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증명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

□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“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,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**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**할 수 있게 되었으며,

○ 또한, **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**하게 되어 **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**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□ 원산지관리시스템(FTA KOREA) 사용*을 원하는 기업은 **국가 무역 전산망(uTradeHub)에 접속**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.

* 신규 사용 문의 : KTNET(02-6000-2036, 해외IT사업실)

【붙임】 원산지관리시스템(FTA KOREA) - 대한상의 ‘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간’ 연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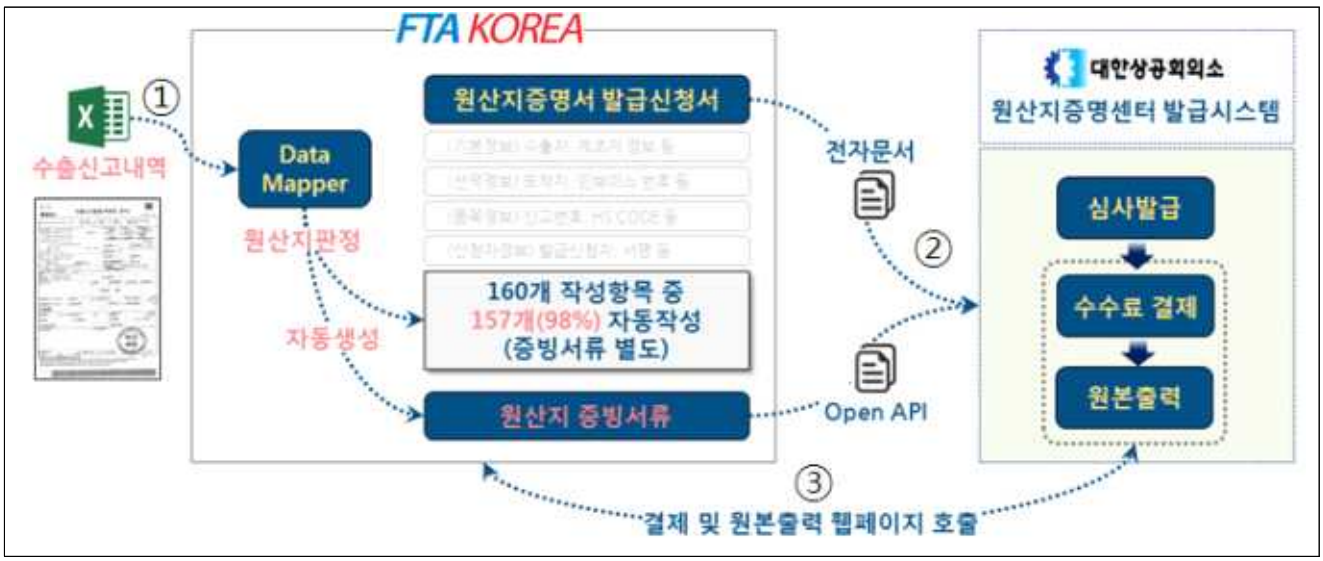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형명우 사무관(☎ 044-203-41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원산지관리시스템(FTA KOREA) - 대한상의 '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간' 연계**

□ 시스템 개요

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	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
ㅁ FTA KOREA 1.0 오픈 - 2011. 6월 ㅁ FTA KOREA 표준형 고도화('14~'16) ㅁ FTA KOREA 간편형 개발·오픈('18. 4. 9.)	ㅁ 원산지증명서 웹 발급시스템 구축 - 2006. 10월 ㅁ 웹 발급시스템 리뉴얼 오픈('16. 4. 20.)

□ 연계 방식



① (**신청서 작성 항목 맵핑 기능**) 기업의 수출신고내역 등의 맵핑을 통해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신청서상 작성항목이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 시 편의성을 제고

② (**신청 자료 전송**) FTA KOREA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고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높임

③ (**증명서 출력**) FTA KOREA에서 시스템자료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대한상의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FTA KOREA 서비스(www.ftakorea.co.kr)에서 호출해서 출력 가능

※ (기관발급 대상협정) FTA 5개 협정(중국, 아세안, 인도, 베트남, 싱가포르)